

『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1월 1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횟수를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 공무원의 분할 사용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23조)

구 분	일 수	분할 횟수		비 고
		현행	개정안	
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	10일	2회	2회	변동없음
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	20일	2회	4회	
재직기간 30년 이상	20일	2회	4회	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 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회”를 “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분할 횟수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횟수에 포함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 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	제23조 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<u>2회</u> 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